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91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강승규 · 인요한 · 박형수
이종배 · 김재섭 · 박덕흠
김소희 · 김미애 · 김위상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1항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14. (생략) ② (생략)	제71조(벌칙) ①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13의3.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5. (생략) <u>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u>	제76조(과태료) ① ----- ----- ----- ----- -----. 1. ~ 6의5.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u> <u>자</u> 7.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